

2024

Apr_2nd

462호



JOYANG
CUSTOMS
SERVICE CORP.

Customs FOCUS



관세법인 조양
JOYANG CUSTOMS SERVICE CORP.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

CONTENTS



01

관세사칼럼

중국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사례(삼성, LG상표 리모컨)



02

이주의초점

우리나라 첫 FTA 발효 20주년, 양적 경제성장 기여 평가



03

판례연구

임가공 계약에 따른 QC(Quality Control)비용을 실제 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



04

개정법령

최근 개정 법령 개정사유와 주요내용



05

질의응답

자주 찾는 관세 무역 질의에 대한 응답



06

기타무역소식

관세청 공지 · 무역 뉴스 등 기타 무역소식



<중국세관의 지적재산권 보호사례(삼성, LG상표 리모컨)>

작년(23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한국 유명브랜드 제품의 중국산 지재권 침해물품을 중국세관이 타국으로 수출할 때 중국세관이 적발하여 한국 브랜드 지재권을 보호한 케이스이지만 중국내 수입할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에서의 지재권 보호는 권리자가 사전에 세관(해관총서)에 상표등록을 해 놓아야 세관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며, 전세계적으로 유사합니다.)

당사자는 일반무역방식을 통해 스페인으로 리모컨을 수출하기 위해 대리점에 세관신고를 하도록 위임했습니다. 조사 결과 실제 수출 상품 중 'SAMSUNG' 로고가 있는 리모컨 1500대, 'LG' 로고가 있는 리모컨 7250대 등 가격은 총 110,124.00위안 (한화 약 2천만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LG는 각각 삼성 상표전용권과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이라며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세관은 조사 결과 당사자가 수출한 물품의 리모컨에 사용하는 삼성 로고와 LG 로고가 상표권자가 등록한 삼성 로고와 동일하고 사전에 상표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상기 상품은 삼성전자의 'SAMSUNG' 상표전용권과 LG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입니다.

당사자가 위에서 언급한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는 타인의 상표 독점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수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91조 및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행정처벌 시행에 관한 규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세관은 위에서 언급한 'SAMSUN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1500개와 'L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7250개를 몰수하고 11012.40위안(상품가격의 1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세관은 법에 따라 수출입 화물의 상표전용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에 따라 세관은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수출입 상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보호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SAMSUNG' 또는 'LG' 상표의 소유자 또는 권한이 없으므로 'SAMSUN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과 'L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은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수출된 것으로 인정되며 세관은 법에 따라 출입국 물품의 상표권 및 회수조치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침해 물품은 세관에서 통관할 수 없습니다.

2. 지적재산권 보호조치의 신청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주동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지적 재산권 세관 보호는 신청에 따른 화물통관보류 신청과 권한에 따른 조사 및 처리로 구분됩니다. 화물의 통관보류 여부는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합니다.

통관보류 신청이란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침해가 의심되는 물품이 수출입되는 것을 발견하고 세관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경우 물품의 수출입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수출입 상품은 등록된 지적 재산권 또는 등록되지 않은 지적 재산권이 될 수 있습니다.

직권 조사 및 처리란 수출입 물품이 중국세관에 등록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는 데, 수출입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관련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것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수하인 및 송하인이 지정된 기한 내에 상품의 지적 재산권 상태를 신고하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하인과 송하인이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품의 지적재산권 상태를 신고하지 않고,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세관이 상품이 해관총서에 등록된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세관은 상품의 반출을 중지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세관으로부터 서면 통지를 받은 후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세관에 통관보류 요청 여부를 회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삼성전자 주식회사와 LG는 위의 물품이 각각 삼성 상표전용권과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세관에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기록 시스템에서 'SAMSUNG' 및 'LG'를 검색하면 해당 상품 범주를 9번째로 조회할 수 있으며, 사용된 상품에 수신기가 포함된 등록된 지적 재산권임을 확인하고 해당 지적 재산권 권리자를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세관은 상품을 통관 보류할 수 있습니다. 세관의 화물 통관보류는 지적 재산권 권리자가 주도함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관은 수출입 화물의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 여부를 조사합니다.

수출입 물품이 관련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지적 재산권의 권리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지적재산권 권리자의 신청과 세관의 조사 및 처리 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되면 세관은 이에 상응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SAMSUNG' 및 'LG' 로고가 있는 수출 리모컨이 침해로 의심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침해 물품에 대해 상응하는 처리를 수행하고 수출입 위탁자에게 행정 처벌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관의 조사 후 침해를 인정하여 세관에서 상응하는 처벌을 하였으나, 세관이 물품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적재산권 권리자가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인민법원에 침해를 중지하거나 재산 보호를 명령하는 조치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관은 침해 혐의물을 통관 보류한 날로부터 50근무일 이내에 인민법원이 관련 물품의 역류를 협조(인정)한다는 서면 통지를 받은 경우 협조해야 하며, 인민법원의 압류 지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세관은 물품을 반출시켜야 합니다. **세관이 물품이 관련 특허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수하인 및 송하인은 세관에 물품의 가치에 해당하는 담보를 제공한 후 물품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세관은 물품을 반출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물품 반출에 대한 서면 통지서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인민법원의 사건접수통지서 사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의 침해 혐의에 대한 행정처벌 기준

'해관법' 제25조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및 행정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침해 물품을 몰수하고 물품 가치의 3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SAMSUNG"과 "LG"가 부착된 리모컨을 수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의 "SAMSUNG" 상표전용권과 LG "LG" 상표전용권을 침해한 총 110124.00위안 상당의 물품에 대해, 세관은 "SAMSUN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1500대, "LG" 로고가 표시된 리모컨 7250대를 몰수하고 11012.40위안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벌금 액수는 물품가액의 10%에 상응하는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 우리나라 첫 FTA 발효 20주년, 양적인 경제성장 기여 평가 >

산업부, 향후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 통상협정 추진으로 “우리 기업 맘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 넓혀 갈 것”

올해 4월 1일은 우리나라의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나라의 FTA 정책은 1998년 11월 5일 총리 주재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첫 상대국으로 칠레를 선정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최초의 FTA 협정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칠레 FTA협정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교역 동향과 시사점’을 통해 양국 간 산업구조의 보완성, 농업피해 최소화, 20여개 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칠레를 중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경제규모가 비교적 작은 국가를 선택함으로써 최초로 시도하는 FTA 협상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면서 FTA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한 것도 칠레를 선택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1999년 9월 뉴질랜드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대통령이 FTA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FTA 체결을 위한 실질적 협상이 시작됐으며, 4년여에 걸친 양국 간 협상 끝에 2004년 4월 1일부터 협정이행에 들어가게 됐다.

한·칠레 FTA가 발효되며 우리는 자동차·휴대전화·세탁기 등 공산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반면 포도·사과·배 등 농산물 위주로 피해를 입기도 했었다.

1) 한·칠레와 첫 FTA 발효 후 20년 간 59개국으로 FTA 영토 증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1일 한·칠레와 첫 FTA 발효를 시작으로 20년간 21건의 FTA를 59개국과 체결해 세계 2위의 경제영토를 구축했다. 이는 전세계 GDP의 85%에 해당한다. 작년에는 필리핀, UAE, GCC, 에콰도르, 과테말라 등 5건의 FTA를 9개국과 추가 서명·타결하고 발효를 준비 중에 있다.

2) FTA 체결, 국내 경제성장에 성공적 기여 평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KIEP가 함께 한 한국의 FTA 20년'에 따르면, 2004년 한·칠레 FTA 체결 당시 수출입 비율은 각각 0.3%, 0.9%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각각 74.6%와 69.0%로 대폭 상승했으며, 해외투자 및 외국인투자 비율은 2004년의 0.2%와 0.0%에서 2020년에는 76.0%와 69.7%로 크게 증가해 양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지대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됐다.

최근 산업부가 발표한 주요국 FTA 경제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한·미 FTA의 실질 국내총생산 (GDP) 성장기여가 1.82%에 달할 정도로 FTA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8일 한·칠레 FTA 발효 20주년을 앞두고 글로벌 도전에 맞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통상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37개국의 주한대사단 및 한국무역협회, KOTRA, 농수산 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수출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FTA를 통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에 달하는 국가들과 구축한 통상네트워크는 대외 불확실성과 리스크에 대응하는데 중요한 정책수단”이 라며, “경제안보 시대에 맞춰 유연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상협정을 지속 추진해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우리 기업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경제 운동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언급해 앞으로도 정부의 FTA 통장정책은 광범위한 경제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1.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에게 지급한 품질관리비용을 제외하고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2. 당시 청구법인은 판매자와의 임가공계약을 하며 그 중 품질관리는 별도의 품질관리업체에 하청하였고 품질관리비용을 구매자가 부담하였다. 이에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처분청은 해당 품질관리비용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된 금액이며, 해당 비용의 지급하지 않으면 수입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점으로 보아 직접지급금의 일부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임가공계약서에서 임가공 내용의 하나로 품질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품질검사를 쟁점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간접지급금으로 과세 처분되었다.

II. 양측주장

1.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QC(Quality Control)비용을 쟁점 판매자가 아닌 제3의 품질관리 업체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에게 가공을 의뢰하여 수입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 판매자와 합의하여 별도의 품질관리 업체를 지정하고 이들에게 품질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쟁점QC업체에게 계약된 장당 금액을 품질관리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 QC비용을 임가공비와 함께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판매자는 이를 QC업체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쟁점QC비용은 궁극적으로 쟁점QC업체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관세조사 과정에서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한 내역을 일부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이 QC업체와 직접 품질관리 계약을 체결하거나 쟁점QC비용을 쟁점QC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쟁점판매자를 통하여 지급한 이유는, 쟁점QC업체들이 영세업체이다 보니 중국 정부에 대외무역경영자격 등록 신청 및 중국 세관에 신고·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외국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영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 품질관리 활동은 청구법인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이므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임가공계약서상 '품질검사'와 '품질관리'를 전혀 다른 공정으로 해석하였다.

즉, 처분청은 쟁점QC업체가 이 중 '품질관리'만을 수행하였다고 보아 쟁점QC비용을 임가공비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1조 제1항에서 '품질검사' 활동을 "생산 LINE 투입관리, 봉제기술 지도, 품질관리,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QC비용은 임가공비로 지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쟁점물품의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서상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인 아니라, 쟁점QC업체에게 별도로 위탁된 활동으로, 만약 품질검사 활동이 쟁점판매자에게 위탁된 임가공 공정이라면 쟁점임가공계약서에 쟁점QC업체를 별도로 지정하고, 쟁점QC비용을 별도로 책정할 이유가 없다.

처분청은 쟁점QC비용이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해 적용대상인 간접지급금액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수입거래와 관련된 금액의 지급이 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거래조건, 즉 판매자의 이익이 되어야만 과세대상인 실제지급가격에 해당하는데, 이 건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임가공계약과 별개의 계약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이는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이며, 쟁점QC비용이 쟁점QC업체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쟁점QC비용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다.

2. 처분청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쟁점 임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임가공 내용에 품질검사를 포함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계약당사자 간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품질관리' 등을 포함한 '품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쟁점판매자는 이를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쟁점QC업체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5조에서 000의 쟁점QC비용을 매월 말일까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품질검사 활동은 쟁점 임가공계약상 임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이 중 '품질관리' 업무를 쟁점QC업체가 수행하기로 한 것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합의에 따른 것으로, 쟁점판매자가 이를 쟁점QC업체에게 재하청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하였고, 쟁점판매자가 쟁점QC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였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금액 전체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지 물품대금을 요소별로 구분하여 판매자가 다른 업체에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판매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금액만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국 위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 QC비용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되었으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간주되더라도 그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적용대상은 간접지급금액이며, 쟁점QC비용은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직접지급금액이므로 적용대상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더구나 쟁점주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은 구매자의 독자적인 필요와 판단에 따라 발생한 것을 의미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과 관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QC비용은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 간 쟁점임가공계약을 구성하는 거래조건으로 쟁점판매자에게 직접 지급된 것이므로 쟁점주해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III. 쟁점 및 판단

(쟁점)

임가공계약에 따라 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1)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와의 쟁점임가공계약서 제1조에서 '임가공 내용'에 '품질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제3조에서 임가공 제품은 정품으로 납품하되 청구법인의 품질검사 기준에 의한 검수에 합격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1조에서 '품질검사'를 '생산LINE 투입관리·봉제기술 지도·품질관리 및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쟁점판매자의 합의에 따라 '품질관리 업체'를 쟁점QC업체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또한 쟁점 임가공계약서 제15조에서 책정된 QC비용과 쟁점QC비용 정산용 송품장에는 쟁점QC비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지급되는 QC비용은 스타일(규격)별로 단가가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 3) 청구법인은 쟁점판매자에게 지급한 쟁점QC비용이 다시 쟁점QC업체에게 지급된 지급내역에는 쟁점물품의 상세내역이나 수량 등과 같이 그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한편 쟁점QC업체가 수행한 구체적인 품질검사 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나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거나 아니면 그 활동 등을 관리한 자료 등은 별도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 측은 정기적으로 QC업체에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쟁점 임가공계약서에서 품질불량이 발생한 임가공 제품에 대하여 쟁점판매자가 자재비용과 임가공비만을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쟁점QC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구매자인 청구법인이 쟁점QC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QC비용은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3. 위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임가공계약서에서 임가공 내용의 하나로 품질검사를 규정하고 있고, 품질검사를 쟁점판매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품질검사의 범위를 '생산LINE 투입관리·봉제기술 지도·품질관리 및 PACKING 관리'로 규정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자에게 쟁점QC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쟁점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쟁점QC업체의 품질검사 활동 등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위와 같은 품질검사의 업무범위 등으로 볼 때 쟁점QC비용은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구성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QC비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한다.

(주문)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IV. 시사점

관세법 제 30조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규정하며, 이때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직접 지급하는 금액 외에 간접지급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자가 비용 부담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이 활동 비용은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품질관리업무의 범위 해석과 QC비용의 직접 또는 간접지급금으로의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구매자의 비용으로 QC 비용이 지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비용은 청구법인과 판매자 간에 임가공계약에 따른 “거래조건에 따라 판매자에게 직접지급”된 비용으로 보아 과세처분 하였습니다.

명목상 구매자 비용부담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 판매자와의 계약조건으로 지급되는 비용이므로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금액으로 판단되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래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실질을 판단해야 하는 바, 비용별 과세여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관세법인 조양으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조심2018관0196, 2019-06-05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23-36호, '23.04.27.)

1. 개정사유

- 1) 관세법 제233조의2(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개정사항 반영
- 2) 인증수출자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 3)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 4) 「행정조사기본법」에 규정된 행정조사 절차 규정에 맞게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서면확인/현지확인) 업무절차 정비
- 5) 별지서식 수정 및 신설

2. 주요 개정내용

- 1) 관세법 상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고시에 반영
 - 목적 조항에 관세법 제233조의2 제4항 제3호 반영(§1)
 - 한국원산지정보원이 수행하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조문 신설(§3의2)

- 2)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굴된 기업의 규제애로 사항 해소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별 인증연장에 따른 비용·관리부담 해소를 위해 보유중인 품목의 인증을 일괄 연장하고 인증만료일을 통일할 수 있게 개선(§13②)
 - 개인사업자의 포괄양수도를 통한 법인전환시 신규인증 절차 없이 변경신고만으로 인증승계가 가능하도록 규정 명확화(§14③)

- 3) 인증 효력상실 사유 추가 및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절차 구체화
 -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 신청을 효력상실의 사유로 추가(§15①)
 - 인증수출자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시 통지대상자의 청문일자조정 요청 규정 신설 및 청문통지 서식 신설(§19①, 별지 제9호)

- 4)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업무절차 정비
 - 업체에 서류제출 요구 시 신설 서식(별지 제11호)으로 요청(§17②)
 - 서면/현지확인 완료 시 7일 이내에 신설 서식(별지 제12호)으로 그 결과를 대상업체에 통지(§17③)

5) 지서식 수정 및 신설

- 【수정 4건】 제1호의2, 제3호의2, 제4호, 제7호
- 【신설 4건】 제9호(청문통지서), 제10호(청문일자 조정요청서), 제11호(서류제출요구서), 제12호(서면(현지)확인 결과통보서)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FTA 관련 문의가 있는 고객사분들께서는 언제든지 편히 관세법인 조양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1. BL양수도 계약 시 원산지증명서 적용 가능 여부

□ (질의)

Q. 태국의 생산자(A)가 한국의 무역업체(B)와 매매계약을 하고 A의 생산품을 한국의 소비자(C)로 직접운송한 후, B/L상 수하인인 C사(직접수입자)는 B사가 재발행한 상업 송장(가격 상승)으로 수입통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A사는 B사로 수출하고(B/L,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B사로 발행), B사는 한국의 보세구역 내에서 수입관련 서류를 C사에 양도하여 판매할 경우 C사는 수입 통관할 때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 (답변)

A. 원산지증명서상에 발행된 물품 및 수량 등이 일치하고, 비록 수입자가 상이하나 이는 보세구역에서 B/L 양수도거래가 이루어진 경우로서 수입신고시 B/L양수도계약서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동일성이 확인된다면 C사가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방법

□ (질의)

Q. 수입 제품에서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MADE IN DE / MADE IN IN 등 독일 / 인도를 약어로 표기하여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기가 적정한지 부적정한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A. 질의하신 독일의 국가명을 'DE'로 표기하거나 인도의 국가명을 'IN'으로 표기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1항 및 제6항,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에 따른 원산지 국가명 표기방법에 해당되지 않아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일과 인도의 영문 국명은 각각 'Germany', 'India' 으로 표시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수입신고 취하 절차

□ (질의)

Q. 수입신고한 것을 취하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합니까?

□ (답변)

A. 수입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취하승인(신청)서'(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6-2호 서식)에 수입신고 취하신청내역을 기재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취하를 승인합니다.

- (1) 수입계약 내용과 상이한 물품, 오송물품, 변질·손상물품 등을 해외공급자 등에게 반송하기로 한 경우
- (2)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물품이 멸실되거나 세관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려는 경우
- (3) 통관보류, 통관요건 불합격, 수입금지물품 등의 사유로 반송하건 폐기하려는 경우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수입신고한 물품을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장치장소에서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

※ 검사로 지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 등의 회피를 위하여 신고 취하를 신청하거나 수입신고수리후에 감면신청을 하기 위하여 신고 취하를 신청하는 행위 등은 정당한 신고 취하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희토류 등 공급망 위기, IPEF 공급망협정으로 돌파구 찾는다



< 희토류 등 공급망 위기, IPEF 공급망협정으로 돌파구 찾는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4월 17일에 발효됨에 따라 올해 첫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공급망 통상 전략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IPEF 공급망협정 발효일에 맞춰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업종별 협·단체, 학계, 연구기관들이 참석해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IPEF 공급망협정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피지와 ASEAN 국가 중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브루나이 등 14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에서 산업부는 올해 3월 25일 발표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된 요소, 흑연, 희토 영구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 연구개발(R&D),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 점검했으며, 필요 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상기 품목이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정책이 필요한 바, 이에 따른 IPEF 공급망협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업계 차원의 세부 활용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OYANG
CUSTOMS
SERVICE CORP.

THANK YOU



관세법인 조양
JOYANG CUSTOMS SERVICE CORP.

연락처 : 02) 516 - 1237

주 소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402 3층 (등촌동, 재영빌딩)